

주식담보대출 거래설명서

토스증권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심의필 2025-00 (2025.00.00)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대출거래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께서는 주식담보대출 거래를 하기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명	주식담보대출(증권담보대출)
개요	주식담보대출(증권담보대출)이란 고객이 토스증권 계좌에 보유(결제기준)한 주식(예탁증권 포함)과 상장지수펀드(ETF)를 담보로 제공하고 고객에게 원화로 현금을 대출해주는 거래를 말합니다.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대출거래는 고객님의 보유한 증권(주식, 펀드, 채권, 파생결합증권 등)을 담보로 대출해 드리는 거래를 말합니다. ○ 신용거래와 달리 주식 매수주문, 출금 등 대출금의 활용이 자유롭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대출거래 시 고객 자신의 현금으로 거래(100% 증거금 거래)할 때와 비교 시 대출거래에 따른 추가 위험이 발생하므로 상환능력 및 다른 지출 계획을 고려하여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 (반대매매(강제판매) 위험) 1)만기 미상환 또는 2)담보유지비율(140%)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사와 상관없는 반대매매(강제판매)에 따른 손실 위험 - (레버리지 위험) 대출금으로 추가 주식 매수 시 훨씬 많은 주식을 매매하게 되므로 시장상황이 예측과 다를 경우 투자원금의 상당부분 또는 투자원금 이상의 손실 가능 ■ <은행등 신용대출과의 차이> 은행 등 신용대출은 무담보대출로써 채권회수는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거래는 담보유지비율 하락 시 등에 반대매매(강제판매)를 통해 즉각 채권이 회수됩니다. 또한 대출거래 이자율은 은행 신용대출에 비해 높을 수 있으며, 기간별로 차등 적용되므로 대출거래를 이용한 투자 시 예상 이자비용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생가능한

불이익

☆ 연체 시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및 신용도 하락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기 미상환 시 담보증권이 반대매매(강제판매) 되며, 반대매매(강제판매)로 모든 주식을 처분한 이후에도 연체금액이 잔존할 경우 연체이자 납부 및 이에 따른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에 대한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인 140% 미만인 경우, 회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해야 하며, 추가로 담보를 납부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강제판매) 시 예상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담보주식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담보부족 발생, 환율은 변화 없음.>

증가 \$200(20 만원) A 주식 50 주 (담보평가금액 \$10,000(1,000 만원)) 담보로 대출금 650 만원(대출비율 65%) 실행 후 대출금 전액 A 주식 \$200(20 만원)에 추가 매수(32.5 주)하였으나, 주가 하락으로 담보유지비율 (140% 미만)을 하회하여 반대매매(강제판매)가 실행될 경우 (A 주식 종목등급 : A 등급, 원/달러 환율 1,000 원 가정, 대출기간 : 30 일 (6.9%), 대출이자 : 36,863 원)

* 담보비율 = 담보평가금액/대출금

날짜	주식가격	담보평가금액	담보비율*	비고
대출거래 원/달러 환율: 1,000 원	200 달러 (200,000 원)	16,500,000 원	253%	
D 일 원/달러 환율: 1,000 원	100 달러 (100,000 원)	8,250,000 원	126%	담보유지비율(140%) 미만 및 추가담보 납부요구
D+1 일 원/달러 환율: 1,000 원	90 달러 (90,000 원)	7,425,000 원	114%	추가담보 미납 담보유지비율(140%) 기준 필요한 담보평가금액은 910 만원으로 167.5 만원 담보부족
D+2 일 원/달러 환율: 1,000 원	- 반대매매 주문은 정규장 시작시간인 23:20(서머타임은 22:20)에 실행 (정규장 시작시간 10 분전까지 현금입금 또는 주식입고 또는 담보증권 매도 또는 대출금 현금상환을 통해 담보부족 해소 필요) ※ 반대매매(강제판매) 절차			

		(D 일) 담보유지비율 하회 사실 발생 및 추가담보납부 요구 → (D+1) 추가담보 납입 기한일이나 추가담보 미납 발생 → (D+2) 반대매매(강제판매) 실행 * 반대매매 수량 = $\frac{\text{담보부족금액}}{\left(\text{반대매매 기준가격} \times \text{담보유지비율} \div (1 + \text{대출이자비율}) \right) - (\text{전일종가} \times \text{기준환율})}$ * 담보부족금액 = (대출금액 x 담보유지비율) - 담보평가금액 * 반대매매 기준가격 = 전일종가 x (1 - 종목등급별 할인율) x (1 - 수수료율) x (기준환율 x (1 - 환율할인율)) * 대출이자비율 = 이자 / 대출금액 ☞ 반대매매 수량 산식은 본문 중 ‘반대매매(강제판매)수량 산정 방식’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종목등급별 할인율을 15%로 가정했을 경우 : 반대매매 기준가격(전일종가) 대비 15% 하락으로 계산) 직전 체결가 \$90(90,000 원) 대비 15% 하락한 가격 \$76.5(76,500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담보증권 50 주 모두 반대매매(강제판매) 필요. ☞ 반대매매 수량 = $\frac{(6,500,000 \times 1.4) - 7,425,000}{((90 \times 0.85) \times (0.999) \times (1,000 \times 0.95) \times 1.4 \div (1.0057)) - (90 \times 1,000)}$ =151.31주 → 담보증권 50주 전량 반대매매(강제판매) 필요. * 반대매매는 온주로만 매도 진행 (소수점 절상 처리) → 반대매매 수량(50 주)이 \$80 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최저 담보유지비율(140%)를 충족하기 위한 임의처분 금액은 4,000,000 원(50 주 × \$80 × 1,000 원)으로 담보부족금액(167.5 만원)의 약 2.39 배 수준 → 담보증권 50 주 전량(400 만원) 반대매매 체결로 대출금(650 만원) 전액상환이 불가하기 때문에 결제일에(D+2 일) 미상환 대출금(250 만원)은 외화 현금미수금(-\$2,500) 처리
--	--	--

※ 미수 반대매매(강제판매) 절차

- 절차 및 수량 계산 방법은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별첨> 참고

☞ (종목등급별 할인율을 15%로 가정했을 경우 : 반대매매 기준가격(전일 종가) 대비 15% 하락으로 계산)

직전 체결가 \$80 대비 15% 하락한 가격 \$68 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담보외증권 32 주 모두 반대매매(강제판매) 필요. (온주만 대상)

☞ 반대매매 수량 = $\frac{\$2,500 + \$1.32 + \$2.50}{(\$80 \times 0.85)} = 36.82 \text{ 주} \rightarrow$ 담보외증권 32 주 전량 반대매매(강제판매) 필요.

→ 담보증권 반대매매 결제일 다음 거래일에 반대매매 수량(32 주)이 \$79 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임의처분 금액은 \$2,528 (32 주 x \$79)로 결제일에 \$2,503.82(미수금(\$2,500) + 미수 연체이자(\$1.32) + 수수료(\$2.50))가 상환되고 계좌에는 A 주식 0.5 주 와 외화예수금 \$24.18 만 남게됩니다.

● <예시 - 담보주식의 주가 하락과 원/달러 환율 급락으로 인한 담보부족 발생.>

종가 \$200 A 주식 50 주 (담보평가금액 \$10,000(1,400 만원)) 담보로 대출금 910 만원(대출비율 65%) 실행 후 대출금 전액 A 주식 \$200 에 추가 매수(32.5 주)하였으나, 주가 하락 및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담보유지비율(140%)을 하회하여 반대매매(강제판매)가 실행될 경우 (A 주식 종목등급 : A 등급, 대출 받는 시점 원/달러 환율 1,400 원, 담보부족 발생 시점 원/달러 환율 1,300 원 가정, 대출기간 : 30 일 (6.9%), 대출이자 : 51,608 원)

* 담보비율 = 담보평가금액/대출금

날짜	주식가격	담보평가금액	담보비율*	비고
대출거래 원/달러 환율: 1,400 원	200 달러 (280,000 원)	23,100,000 원	253%	

	D 일, 7 시 원/달러 환율: 1,400 원	115 달러 (161,000 원)	13,282,500 원	145%	
	D 일, 16 시 30 분 원/달러 환율: 1,300 원	115 달러 (149,500 원)	12,333,750 원	135%	담보유지비율(140%) 미만 및 추가담보 납부요구
	D+1 일 원/달러 환율: 1,300 원	115 달러 (149,500 원)	12,333,750 원	135%	추가담보 미납 담보유지비율(140%) 기준 필요한 담보평가금액은 1,274 만원으로 406,250 원 담보부족
	D+2 일	- 반대매매 주문은 정규장 시작시간인 23:20(서머타임은 22:20)에 실행 (정규장 시작시간 10 분전까지 현금입금 또는 주식입고 또는 담보증권 매도 또는 대출금 현금상환을 통해 담보부족 해소 필요) ※ 반대매매(강제판매) 절차 - 절차 및 수량 계산 방법은 (예시 1) 참고 ☞ (종목등급별 할인율을 15%로 가정했을 경우 : 반대매매 기준가격(전일 종가) 대비 15% 하락으로 계산) 직전 체결가(115 달러) 대비 15% 하락한 가격(97.75 달러)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담보증권 21 주 반대매매(강제판매) 필요. ☞ 반대매매 수량 = $\frac{(9,100,000 \times 1.4) - 12,333,750}{((115 \times 0.85) \times (0.999) \times (1,400 \times 0.95) \times 1.4 \div (1.0057)) - (115 \times 1,400)}$ =20.51주 → 담보증권 21주 반대매매(강제판매) 필요. * 반대매매는 온주로만 매도 진행 (소수점 절상 처리) → 반대매매 수량(21 주)이 97.75 달러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담보유지비율(140%)을 충족하기 위한 임의처분 금액은 약 2,668,575 원(21 주 × 97.75 달러 × 1,300 원) 으로 담보부족금액(406,250 원)의 약 6.56 배 수준			

원리금 연체 시 불이익	◎ 매도상환 또는 반대매매(강제판매) 후 미상환 대출금이 발생할 경우 결제일에 현금미수로 처리되고 해당일에 예수금이 없거나 미수 발생으로 담보외 증권이 추가로 반대매매(강제판매) 되어도 미수금액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미수금액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됩니다. 연체이자율은 국내주식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해외주식은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 따른 미수금액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과 동일합니다. ◎ 그 밖의 불이익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 개인 신용점수 하락 및 대출거래 만기 연장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알림	- 대출 약정 체결 · 실행 · 상환 · 반대매매 등 대출거래 관련 주요내용 통지는 앱 푸쉬, 알림, (알림톡(카카오톡) or SMS)로 발송됩니다. (주말/공휴일 발송 포함) ※ 고객님의거서 통지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거래 관련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통지의 내용이 고객님의거서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객센터(☎1599-7987)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위험	◎ 주식담보대출(증권담보대출)은 만기일까지 대출금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나 담보유지비율(140%)미만인 당일(D 일)을 포함하여 익거래일(D+1 일)까지 현금입금, 주식입고, 담보주식 매도의 방법 등으로 담보부족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다음 거래일에 반대매매(강제판매)로서 상환합니다. ◎ 대출거래 시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담보증권의 가격의 변동으로 담보유지비율(140%)에 미만인 경우, 추가담보를 납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대매매(강제판매)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 대출거래계좌의 담보비율이 일정비율(170%) 이하인 경우 고객 계좌내의 현금 및 증권의 출금 및 출고가 제한됩니다. ◎ 회사는 대출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대출거래가 있는 고객은 매수주문, 추가대출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합니다.
민원 · 상담이 빈번한 숙지 필요사항	Q1. 미국 증권 시장에 상장된 모든 증권이 담보대출 가능한가요? A1. 일부 증권(예 : 증거금률 100%인 증권)은 대출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증권의 대출거래 가능 여부는 토스증권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2. 대출거래 시 담보유지비율(140%) 미만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A2. 담보유지비율(140%) 미만인 당일(D 일)을 포함하여 익거래일(D+1 일)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상환기일 전이라도 필요 수량만큼 회사가 반대매매(강제판매) 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강제판매) 수량은 담보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고객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여 대출금 상환에 충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반대매매(강제판매) 시 A~B 등급 주식은 전일 증가의 15%, 기타 등급 주식은 전일 증가의 20%로 할인된 가격으로 반대매매(강제판매) 수량이 산정됩니다. 매도(처분)금액은 담보부족금액을 초과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매매(강제판매)를 피하려면 담보비율을 수시로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매매(강제판매)는 국내주식은 시가단일가 매매시간(KRX)에 접수되며, 해외주식은 정규장 시장에 접수되어 매도됩니다.

Q3. 담보유지비율(140%) 미만으로 담보부족 통보를 받은 경우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A3. 담보유지비율(140%) 미만인 당일(D 일)을 포함하여 익거래일(D+1 일)까지 담보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반대매매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담보부족을 해소하는 방법은 i) 추가 담보를 납부하거나 ii) 대출금을 상환하여 담보유지비율을 맞추는 방법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i) 추가 담보 납부는 담보로 인정하는 현금 입금, 주식 입고를 인정합니다. ii) 대출금을 상환하여 담보유지비율을 맞추는 방법은 계좌내 보유한 현금으로 현금상환, 담보증권 매도상환(체결기준)을 인정합니다. 현금상환은 상환시점의 담보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담보증권 매도상환은 매도 체결 시 담보부족이 해소될 수 있을 만큼 매도해야 담보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반대매매일에 해외주식의 경우 23 시 20 분(서머타임인 경우 22 시 20 분까지)까지 담보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반대매매(강제판매)가 진행됩니다.)

Q4. 반대매매(강제판매)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어떤 경우가 있나요?

A4. i) 상환기일 미상환 시 ii) 담보유지비율(140%) 미만인 당일(D 일)을 포함하여 익거래일(D+1 일)까지 추가담보 납입요구를 받았으나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iii) 미수거래 결제일에 미수금액을 갚지 않는 경우에 반대매매(강제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증권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에게 담보 추가납입 요구 및 징구 없이 반대매매(강제판매)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앱 알림/푸시 및 (알림톡 or SMS)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합니다.

Q5. 대출거래를 만기 전에 상환하거나 만기 도래 시 연장이 가능한가요?

A5. 만기 전 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기의 연장은 만기연장 시점에 대출가능종목으로 평가된 종목에 한하여 이자납입 후 1 회** 가능합니다. 단, 담보부족계좌 및 연체정보 등이 있는 경우 만기연장이 불가합니다.

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 본 금융상품에 대한 문의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토스증권 고객센터(02-1599-7987)를 통해 상담 가능하며, 민원·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전자민원 창구>전자민원 신청) 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

▣ 대출거래 관련 주요 내용

상품명	주식담보대출(증권담보대출)
대상고객	개인 (단,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담보대출 불가) [주식담보대출 신청불가 대상 기준] ① 미성년자 ② 토스증권 임직원 ③ NICE 기준 신용불량상태 고객 ④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고객 ⑤ 부실거래자 및 채무불이행 고객 ⑥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고객 ⑦ 사고계좌 등록 고객 ⑧ 토스증권 및 관계사 최대주주/등기임원/특수관계인 ⑨ 휴대폰 번호 미등록 고객 ⑩ 이메일 주소 미등록 고객 ⑪ 주소(자택 or 회사) 미등록 고객
대출약정	대출 거래를 희망하는 고객은 토스증권에 본인명의로 계좌를 가지고 있거나 신규 개설한 고객으로서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체결한 고객이어야 하며, 주식담보대출약관과 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숙지 후 토스증권 앱을 통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대출약정은 고객이 해지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상품 내용	주식담보대출(증권담보대출)이란 고객이 토스증권 계좌에 보유(결제기준)한 주식(예탁증권 포함)과 상장지수펀드(ETF)를 담보로 제공하고 고객에게 원화로 현금을 대출해주는 거래를 말합니다.																								
대출한도 · 인지세 및 대출기간	1) 고객별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대출금 지급 통화는 원화(W)입니다) ※ 최소 대출가능금액 : 10만원 2) 인지세 : 고객과 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table><tr><td>대출약정금액</td><td>5 천만원 이하</td><td>5 천만원 초과 1 억원 이하</td><td>1 억원 초과 10 억원 이하</td><td>10 억원 초과</td></tr><tr><td>인지세액</td><td>비과세</td><td>7 만원</td><td>15 만원</td><td>35 만원</td></tr><tr><td>고객부담</td><td>-</td><td>3 만 5 천원</td><td>7 만 5 천원</td><td>17 만 5 천원</td></tr><tr><td>회사부담</td><td>-</td><td>3 만 5 천원</td><td>7 만 5 천원</td><td>17 만 5 천원</td></tr></table> ※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약정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 약정해지 및 한도 감액시에도 인지세는 환불 불가합니다. 3) 대출기간 ■ 대출기간 : 90일 (단, 만기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로 지정됩니다.) ※ 1회에 한해 연장신청시점부터 90일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된 90일은 기존 대출만기일이 아닌 연장을 신청한 시점부터 기산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 연장은 국내시간 기준 00:30 ~ 23:30사이 신청 가능하고 만기일 30일 전부터 만기일까지 토스증권 앱을 이용하여 직접 연장처리가 가능합니다. ※ 만기 연장 관련 고객안내는 캘린더 기준 만기일 10일 전, 5일 전, 전일과 당일 총 4번 안내가 나가며 안내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에 안내가 나갑니다. ※ 고객 안내 매체는 토스증권 앱 알림, 푸시, (알림톡 or SMS)를 통해 안내가 나갑니다. ◎ 상환기일 이전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만기연장 여부는 고객 및 담보에 대한 당사의 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 회사는 관계법령, 금융 감독당국의 조치, 담보대출 총 한도 초과 등 그 밖의 회사가 담보대출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규 주식담보대출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스증권 홈페이지 고객 공지를 통해 게시합니다. ■ 만기연장에 관한 사항 ◎ 대출 만기 연장시점에 담보유지비율(140%) 이상 계좌이고, 담보증권 종목이 대출거래 가능 종목이며, 아래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고객이 직접 토스증권 앱을 통해 만기연장 처리가 가능합니다. ● 종목등급 F등급 종목 ● 담보부족 발생 계좌					대출약정금액	5 천만원 이하	5 천만원 초과 1 억원 이하	1 억원 초과 10 억원 이하	10 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 만원	15 만원	35 만원	고객부담	-	3 만 5 천원	7 만 5 천원	17 만 5 천원	회사부담	-	3 만 5 천원	7 만 5 천원	17 만 5 천원
대출약정금액	5 천만원 이하	5 천만원 초과 1 억원 이하	1 억원 초과 10 억원 이하	10 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 만원	15 만원	35 만원																					
고객부담	-	3 만 5 천원	7 만 5 천원	17 만 5 천원																					
회사부담	-	3 만 5 천원	7 만 5 천원	17 만 5 천원																					

	● NICE평가정보 기준 신용불량상태 고객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고객 ● 부실거래자 및 채무불이행 고객 ●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고객 ● 사고계좌 ● 휴대폰 번호 미등록 고객 ● 이메일 주소 미등록 고객 ● 주소(자택 or 회사) 미등록 고객 ● 대출이자 미납 계좌 ◎ 단, 만기연장 신청 시 대출금 사용 기간에 대한 이자를 먼저 납부해야 하며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만기연장은 불가합니다. ◎ 대출불가 종목으로 지정될 시 만기 연장이 불가합니다.																				
대출거래 대상종목 및 대출비율	1) 대출거래 대상 종목 <table><tr><td>대출거래 대상종목</td><td>미국 증권 시장에 상장한 주식 (예탁증권 포함) 또는 상장지수펀드(ETF)로 합니다. ※ 종목등급 E or F 등급 평가종목은 대출 불가 [대출거래 대상종목 확인 방법] ◦ MTS : 토스증권 앱 > 증권 > 개별종목 > 종목명 옆 대출비율 ◦ WTS : 토스증권 WTS > 증권 > 개별종목 > 종목명 옆 대출비율</td></tr></table> 2) 대출비율 <table><tr><th>구분</th><th>종목등급</th><th>기준</th><th>대출비율</th></tr><tr><td rowspan="6">해외주식</td><td>A 등급</td><td rowspan="6">전일종가</td><td>65%</td></tr><tr><td>B 등급</td><td>65%</td></tr><tr><td>C 등급</td><td>65%</td></tr><tr><td>D 등급</td><td>65%</td></tr><tr><td>E 등급</td><td>0% (대출불가)</td></tr><tr><td>F 등급</td><td>0% (대출불가)</td></tr></table>	대출거래 대상종목	미국 증권 시장에 상장한 주식 (예탁증권 포함) 또는 상장지수펀드(ETF)로 합니다. ※ 종목등급 E or F 등급 평가종목은 대출 불가 [대출거래 대상종목 확인 방법] ◦ MTS : 토스증권 앱 > 증권 > 개별종목 > 종목명 옆 대출비율 ◦ WTS : 토스증권 WTS > 증권 > 개별종목 > 종목명 옆 대출비율	구분	종목등급	기준	대출비율	해외주식	A 등급	전일종가	65%	B 등급	65%	C 등급	65%	D 등급	65%	E 등급	0% (대출불가)	F 등급	0% (대출불가)
대출거래 대상종목	미국 증권 시장에 상장한 주식 (예탁증권 포함) 또는 상장지수펀드(ETF)로 합니다. ※ 종목등급 E or F 등급 평가종목은 대출 불가 [대출거래 대상종목 확인 방법] ◦ MTS : 토스증권 앱 > 증권 > 개별종목 > 종목명 옆 대출비율 ◦ WTS : 토스증권 WTS > 증권 > 개별종목 > 종목명 옆 대출비율																				
구분	종목등급	기준	대출비율																		
해외주식	A 등급	전일종가	65%																		
	B 등급		65%																		
	C 등급		65%																		
	D 등급		65%																		
	E 등급		0% (대출불가)																		
	F 등급		0% (대출불가)																		

이자율 및
이자징수일

1) 이자율

■ 이자율 적용기준

구분	1 일~30 일	31 일~60 일	61~90 일	90 일 초과
이자율	6.90%	7.90%	8.90%	9.20%
대출 거래	○ 대출이자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구성 ○ 기준금리 : 직전 3개월 평균 CD수익률 (※ <u>CD수익률에 대해서는 <참고2> CD수익률 설명서 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u>) ○ 가산금리 :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목표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반영 ○ 매월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공시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https://dis.kofia.or.kr) > 금융투자회사 공시 > 특정공시 > 예탁증권담보유자 이자율 > 기준 및 가산금리 ○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당사 홈페이지(https://corp.tossinvest.com) > 고객센터 > 증권 업무 안내 > 대출)			
	※ 미수금액 발생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국내주식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해외주식은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 따른 미수금액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과 동일합니다.			
	2) 이자 징수일			
	◎ 만기상환 : 상환기일에 이자를 함께 납부 ◎ 매도상환 : 담보증권 매도 결제일에 이자 자동상환처리 ◎ 현금상환 : 만기 전 고객이 별도로 현금상환으로 이자상환처리시 해당 일에 상환처리 ※ 이자징수는 만기상환, 매도상환, 현금상환시에 징구되며, 고객이 별도로 이자상환처리가 가능합니다. ※ 현금상환의 경우 한국시간 기준 00:30~23:30 까지 가능합니다.			
※ 이자율 적용방식 : <u>체차법</u>으로 기간별 차등적용 ※ 적용방식(소급법, 체차법, 단일법) 대해서는 부록(용어안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대출이자 : 6월 1일 ~ 8월 29일 (대출기간 90일) 대출금 1천만원 사용 시(기간형, 체차법 적용)				

※ 이자징수는 만기상환, 매도상환, 현금상환시에 징구되며, 고객이 별도로 이자상환처리가 가능합니다.

※ 현금상환의 경우 한국시간 기준 00:30~23:30 까지 가능합니다.

※ 이자율 적용방식 : [체차법]으로 기간별 차등적용

※ 적용방식(소급법, 체차법, 단일법) 대해서는 부록(용어안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대출이자 : 6 월 1 일 ~ 8 월 29 일 (대출기간 90 일) 대출금 1 천만원 사용 시(기간형, 체차법 적용)

	대출이자율 1~30 일 : 6.9%, 31~ 60 일 : 7.9%, 61~90 일 : 8.9%, 90 일 초과 : 9.2% ※ 계산식 : 대출금액 X 기간별 이자율 X 대출일수/365 일(윤년의 경우 366 일) <table><tr><th>이자징수일</th><th>이자금액</th><th>계산식</th></tr><tr><td>만기상환 8 월 29 일</td><td>192,355 원</td><td>(10,000,000 원 x 6.9% x 30/365) + (10,000,000 원 x 7.9% x 30/365) + (10,000,000 원 x 8.9% x 29/365)</td></tr><tr><td>매도상환 체결 6 월 30 일</td><td>58,876 원</td><td>(10,000,000 원 x 6.9% x 30/365) + (10,000,000 원 x 7.9% x 1/365)</td></tr><tr><td>반대매매(강제판매) 주문 체결 8 월 22 일</td><td>185,040 원</td><td>(10,000,000 원 x 6.9% x 30/365) + (10,000,000 원 x 7.9% x 30/365) + (10,000,000 원 x 8.9% x 26/365) * 8 월 25 일 결제일로 가정 (결제일까지 주말 포함)</td></tr></table> * 대출일 불산입.상환일 산입, 원미만 절사, 매도상환/반대매매의 경우, 결제일 기준 이자 계산	이자징수일	이자금액	계산식	만기상환 8 월 29 일	192,355 원	(10,000,000 원 x 6.9% x 30/365) + (10,000,000 원 x 7.9% x 30/365) + (10,000,000 원 x 8.9% x 29/365)	매도상환 체결 6 월 30 일	58,876 원	(10,000,000 원 x 6.9% x 30/365) + (10,000,000 원 x 7.9% x 1/365)	반대매매(강제판매) 주문 체결 8 월 22 일	185,040 원	(10,000,000 원 x 6.9% x 30/365) + (10,000,000 원 x 7.9% x 30/365) + (10,000,000 원 x 8.9% x 26/365) * 8 월 25 일 결제일로 가정 (결제일까지 주말 포함)
이자징수일	이자금액	계산식											
만기상환 8 월 29 일	192,355 원	(10,000,000 원 x 6.9% x 30/365) + (10,000,000 원 x 7.9% x 30/365) + (10,000,000 원 x 8.9% x 29/365)											
매도상환 체결 6 월 30 일	58,876 원	(10,000,000 원 x 6.9% x 30/365) + (10,000,000 원 x 7.9% x 1/365)											
반대매매(강제판매) 주문 체결 8 월 22 일	185,040 원	(10,000,000 원 x 6.9% x 30/365) + (10,000,000 원 x 7.9% x 30/365) + (10,000,000 원 x 8.9% x 26/365) * 8 월 25 일 결제일로 가정 (결제일까지 주말 포함)											
담보의 징구	1) 담보의 징구 : 회사는 고객과의 대출거래에 있어, 고객이 지정한 해외 주식(예탁증권 포함) 및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담보로 징구하며, 이와 별도로 고객이 보유한 원화 또는 외화 예수금, 기타 담보 외 증권 역시 담보로 징구됩니다. 2) 담보증권 평가 :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최근일 기준가격)로 평가합니다. ◎ 담보부족 산정 시간 : 7시, 16시 30분, 20시 3번 산정되며, 추가담보납부 요구는 16시 30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7시와 20시에는 담보부족 해소가 가능합니다. ◎ 단, 해외주식의 경우 종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0시에 추가로 담보부족 산정이 수행되고 담보부족 0회차인 고객 중 담보부족 발생으로 1회차가 될 수 있고 이때 알림/푸쉬/알림톡 또는 SMS로 담보부족 안내가 진행됩니다. ◎ 국내주식은 대응가가 0원이면 담보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단, 대응가 0원의 지정사유가 투자경고·주의·투자위험 종목인 경우 담보로 인정됩니다. ◎ 해외주식은 회사가 정한 기준일의 종가에 따른 시가총액 6억 달러(\$) 미만인 경우 담보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1배 초과(음의 배율 포함) 상장지수펀드(ETF)는 레버리지 비율을 제거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 담보평가되는 종목은 코스피, 코스닥, NYSE, NASDAQ, AMEX에 상장된 종목 중 당사가 정한 종목에 대해서만 평가됩니다.																			
담보의 관리	계좌의 담보비율(=담보평가금액/대출금액)이 담보유지비율(140%)미만인 경우,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충족할 수 있는 금액만큼 담보의 추가납입을 요구합니다. 담보평가금액은 체결기준 증권의 평가금액과 원화 예수금, 당일 기준환율로 계산한 외화 예수금(USD)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1) 담보유지비율 ■ 담보유지비율 : 140% (단, 담보비율이 170% 이하인 경우, 출금고 제한 적용) ※ 담보비율은 당일 종가로 평가하며 140% 미만인 경우 회사는 담보의 추가납입을 요구합니다. ※ 담보평가에서 제외되면 해당 종목의 평가금액은 0원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해당 종목을 주식입고 하더라도 담보비율을 상승시킬 수 없습니다. ※ 담보비율 170% 초과한 경우에만 출금 및 출고가 가능합니다. 2) 담보유지비율 하회 시 추가담보 제공 기간 <table><tr><th>담보유지비율</th><th>추가담보 제공 기간</th></tr><tr><td><u>140%미만</u></td><td><u>담보부족요구일을 포함하여 2거래일 이내</u></td></tr></table> 예시) 계좌내 보유한 해외주식 애플(종목등급 : A등급, 대출비율 65%)의 원화환산금액 500만원을 담보로 325만원을 대출할 경우 담보평가금액은 825만원이 되고 대출금 325만원 대비 담보비율은 253%가 됩니다. 담보비율(170%)인 552.5만원 초과분인 272.5만원에 대해서 현금 출금 또는 주식 출고가 가능하고 담보평가금액이 담보유지비율(140%)인 455만원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담보부족에 따른 추가담보 납부요구가 진행됩니다. 해당일을 포함하여 익거래일(D+1일)까지 추가 담보를 납부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담보부족에 따른 반대매매일 예시 <table><tr><th>목</th><th>금</th><th>토</th><th>일</th><th>월</th></tr><tr><td>D일</td><td>D+1일</td><td>휴장</td><td>휴장</td><td>D+2일</td></tr><tr><td>16시 30분 담보유지비율(140%) 미만 발생 추가담보 납부요구</td><td>16시 30분 담보유지비율(140%) 연속 미만 발생 추가담보 납부요구</td><td></td><td></td><td>담보부족 반대매매일</td></tr></table>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 제공 기간	<u>140%미만</u>	<u>담보부족요구일을 포함하여 2거래일 이내</u>	목	금	토	일	월	D일	D+1일	휴장	휴장	D+2일	16시 30분 담보유지비율(140%) 미만 발생 추가담보 납부요구	16시 30분 담보유지비율(140%) 연속 미만 발생 추가담보 납부요구			담보부족 반대매매일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 제공 기간																			
<u>140%미만</u>	<u>담보부족요구일을 포함하여 2거래일 이내</u>																			
목	금	토	일	월																
D일	D+1일	휴장	휴장	D+2일																
16시 30분 담보유지비율(140%) 미만 발생 추가담보 납부요구	16시 30분 담보유지비율(140%) 연속 미만 발생 추가담보 납부요구			담보부족 반대매매일																

	통보 1회차	통보 2회차			
	3) 대출계좌의 통제 (매수/출금고) 담보부족에 따른 추가담보 납부요구 통보 1회차 이상인 경우 국내주식, 해외주식, 해외채권 매수 및 출금, 출고 불가합니다. ※ 단,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출금, 출고가 가능합니다. ● 배당 등 권리 발생으로 세금납부 목적의 출금 ● 권리 및 유상청약 등에 따른 권리청약 목적의 출금 ● 환전 등 계좌내에서 발생하는 출금				
대출상환	1) 상환방법 ■ 매도상환 : 대출 시 고객이 지정한 담보증권 종목을 매도 체결하여 결제일에 원리금(대출원금+이자) 상환 ■ 현금상환 : 원리금(대출원금 + 이자)을 현금으로 상환 ■ 만기상환 : 만기일에 원리금(대출원금+이자)을 현금상환 또는 매도상환 ※ 상환기일(만기일)까지 원리금(대출원금 + 이자)을 직접 갚지 않고 증권계좌에 예수금으로 보유한 경우 그 다음 거래일에 만기미상환에 따른 반대매매 절차가 실행되고 이때 당일 출금가능한 원화 또는 외화 예수금 기준에서 현금상환 처리 후 미상환 대출금액에 대해서 반대매매(강제판매) 됩니다. 반대매매(강제판매)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도상환시에는 환전 수수료 우대 적용되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우대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상환매체 ■ 매도상환 : 토스앱, WTS ■ 현금상환 : 토스앱 3) 상환일 ■ 매도상환 : 결제일(매도체결일(T)+2 거래일) ■ 현금상환 : 요청일 즉시 4) 유의사항				

	■ 원리금(대출원금 + 이자) 상환의 경우 원금기준 최소 상환금액은 1 만원입니다. 단, 전액 상환금액이 1 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상환 가능합니다. ■ 현금상환 가능시간은 국내시간 기준 00:30 ~ 23:30 입니다. ■ 이자상환은 일부 상환이 불가합니다. ※ 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 반대매매(강제판매)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	<반대매매사유> √ 주식담보대출 거래 상환 요구를 받고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않는 경우 √ 담보유지비율(140%) 미만인 당일을 포함하여 익거래일까지 추가담보 납입요구를 받았으나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 미수거래 후 미수금액을 결제일(D+2 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미수거래 반대매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미수거래 설명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반대매매(강제판매) 사유 발생 : 회사는 다음의 경우 그 다음 거래일에 ①고객계좌 예탁 원화현금 → ②고객계좌 예탁 외화현금 → ③담보증권 → ④담보 외 증권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국내주식은 시장가, 해외주식은 직전 체결가의 -7% 가격으로 반대매매(강제판매)를 통해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외화 예수금은 출금가능금액 범위내에서 자동 환전 후 상환에 사용됩니다. (자동환전시간 : 반대매매일의 8 시 45 분경 (수능일, 개장일 : 9 시 45 분), 23 시 15 분경 (서머타임인 경우 22 시 15 분)) ※ 국내주식 반대매매(강제판매) 실행 시장 : 한국거래소(KRX) ※ 해외주식 반대매매(강제판매) 실행 시장 : NYSE, NASDAQ, AMEX ※ 반대매매일에 해외주식의 경우 23 시 20 분(서머타임인 경우 22 시 20 분까지)까지 반대매매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반대매매(강제판매)가 진행됩니다. ※ ②고객계좌 예탁 외화현금의 환전 시에는 50% 환전 수수료 우대가 적용됩니다. ※ 반대매매(강제판매)시에는 환전 수수료 우대 적용되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우대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반대매매(강제판매)수량 산정 방식 : 반대매매(강제판매) 수량은 다음의 산식으로 결정됩니다.

- 반대매매(강제판매)수량 = $\frac{\text{담보부족금액}}{(\text{반대매매 기준가격} \times \text{담보유지비율} \div (1 + \text{대출이자비율})) - (\text{전일종가} \times \text{기준환율})}$
- ※ 담보부족금액 = (대출금액 x 담보유지비율) - 담보평가금액
- ※ 반대매매 기준가격 = 전일종가 x (1 - 종목등급별 할인율) x (1 - 수수료율) x (기준환율 x (1 - 환율할인율))
- ※ 대출이자비율 = 이자 / 대출금액

가. 종목등급별 할인율

구분	종목등급	할인율
해외주식	A 등급	15%
	B 등급	15%
	C 등급	20%
	D 등급	20%
	E 등급	20%
	F 등급	20%

나. 기준환율 : 외화예금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이 고시한 대고객 전신회매매 현물환율을 기준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은행이 협의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을 당일 기준환율로 적용합니다.

다. 환율 할인율 : 5%

예시) 전일 토스증권 달러(\$) 기준환율이 1,000 원인 경우 5% 할인된 950 원을 기준환율로 반대매매(강제판매)수량을 산출 후 반대매매 처리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많은 수량이 반대매매(강제판매) 될 수 있습니다.

3) 반대매매(강제판매) 순서

(1) 예탁된 현금, 담보증권, 담보 외 증권의 사용 및 처분순서

- ① 원화예수금 → ② 외화예수금 → ③ 담보증권 → ④ 담보 외 증권

※ 원화예수금은 출금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금의 자동상환에 사용되며, 외화예수금은 환전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자동 환전 후 상환에 사용됩니다.

- ※ 증권의 반대매매는, 반대매매일의 23 시 20 분경 (서머타임의 경우 22 시 20 분경) 실시됩니다.
- ※ 자동상환 시점에 고객이 현금상환 시도를 할 경우 보유한 원화예수금과 외화예수금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반대매매 금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 ※ 정규장 열리기 10 분 전까지 주가 변동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면 더 많은 담보부족금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반대매매 금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 ※ 반대매매 주문 실행을 위해 반대매매 주문 실행 전 기존 미체결된 모든 매도 주문이 취소됩니다.

(2) 담보증권 반대매매(강제판매) 순서

- 담보증권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반대매매(강제판매) 후 결제일에 매도정산금액이 입금되면, 원화로 자동 환전하여 대출금 상환에 사용합니다.

① 고객 지정 종목

- ※ 만기미상환 대출의 경우 종목변경이 불가합니다.
- ※ 담보부족 반대매매(강제판매) 시 담보증권 내에서 종목변경이 가능합니다.
- ※ 반대매매(강제판매) 당일 한국시간 기준 23 시 20 분(서머타임 적용 시 22 시 20 분)전까지 반대매매(강제판매) 종목변경이 가능합니다.

② ①에서 미지정인 경우 아래의 순서로 진행

1) 대출 만기일자 빠른 종목

2) 대출 만기일자가 동일한 경우

가. 해외주식 : 종목코드 알파벳 빠른 종목

- ※ 담보부족에 따른 반대매매의 경우 종목별로 진행되며 동일종목의 순서는 만기일이 빠른 순서로 산정됩니다.
- ※ 만기미상환 반대매매가 있는 경우 남은 담보주식을 반대매매 처리하며, 담보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만기미상환 반대매매를 감안하여 담보부족금액을 계산하고 반대매매를 진행합니다.

※ 담보부족 반대매매는 종목별 순서로 계산되며, 매도예정분을 감안하여 담보부족이 해소되는 수준의 담보부족금액으로 반대매매수량을 산정합니다.

(3) 담보 외 증권 반대매매(강제판매) 순서

- 담보증권의 반대매매(강제판매) 후 매도정산금액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부족금액에 대해서는 결제일에 외화 미수금액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외화로 미수금을 변제하여야 하며, 외화 미수금액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한 결제 불이행 시 반대매매(강제판매) 순서로 담보 외 증권이 반대매매(강제판매) 됩니다.

※ 만기미상환 반대매매 시 담보증권이 거래정지로 인해 반대매매가 불가능한 경우 반대매매 당일 대출금은 상환처리되고 외화 미수금액이 발생합니다. 익거래일까지 외화 미수금액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미수동결은 없지만 미수 발생에 따른 반대매매(강제판매)가 실행됩니다. 반대매매(강제판매) 처분 기준은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한 결제 불이행 시 반대매매(강제판매) 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권리발생 사유로 담보대출 일별 배정수량이 1 주 미만이 되는 경우, 자동으로 임의상환 처리되어 외화 미수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보유한 예수금으로 미수금액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미수 발생에 따른 반대매매(강제판매)가 실행됩니다. 반대매매(강제판매) 처분 기준은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한 결제 불이행 시 반대매매(강제판매) 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통지방법 : 추가담보 납입요구는 통지는 앱 푸쉬, 알림과 (알림톡(카카오톡) or SMS)로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했을 시,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에게 담보 추가납입 요구 및 징구 없이 반대매매(강제판매)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앱 알림/푸쉬 및 (알림톡 or SMS)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합니다.

	5) 채무 충당 순서 : 반대매매(강제판매)를 통한 매각대금은 ①처분 관련 비용 → ②연체이자 → ③이자 → ④대출원금 순으로 충당됩니다.
추가 기한의 이익의 상실	■ 다음 1)~6)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고, 통지가 도달하면 고객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 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증권을 반대매매(강제판매)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법인고객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기일 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그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에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시작이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수수료	■ 대출거래는 취급 보수 등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 주식담보대출 거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 단, 매도로 상환하는 경우 또는 반대매매(강제판매) 시 해당 증권거래에 대한 거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당사 홈페이지(https://corp.tossinvest.com > 고객센터 > 증권 업무 안내 > 수수료 및 증거금 > 위탁매매 수수료)를 따릅니다.

■ 약정의 해지 등 관련사항

약정 해지 등 관련사항	◎ 대출약정은 고객이 직접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대출실행금액이 남아 있고 원리금 (대출금 + 이자) 전액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대출약정해지는 불가합니다. ◎ 담보증권을 매도상환을 통해 전액 상환할 경우 매도 결제일까지 대출약정해지는 불가합니다. * 대출약정 해지경로 : 토스증권 앱 > 내 계좌 > 주식담보대출 > 관리 > 대출 해지하기 클릭
-------------------------	--

■ 연체에 따른 불이익, 위험성 등 중요 내용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	◎ 매도상환 또는 반대매매(강제판매) 후 미상환 대출금이 발생할 경우 결제일에 외화 미수금이 발생되고 해당일에 예수금이 없거나 미수 발생으로 담보외 증권이 추가로 반대매매(강제판매)되어도 외화 미수금액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외화 미수금액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됩니다. 연체이자율은 해외주식의 경우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 따른 외화 미수금액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과 동일합니다. ◎ 그 밖의 불이익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 개인 신용점수 하락 및 대출거래 만기 연장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담보대출 거래가 신용에 미치는 영향	1)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고객의 개인신용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신용도 하락 시 신용거래, 주식담보대출거래 등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대출 사용은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역의 대출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4)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시 관련법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되며,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타 금융기관에 제공됨에 따라 고객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거래가 변제나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식담보대출 거래의 위험성	■ 주식담보대출 거래는 일반 현금거래와는 달리 투자원금에 비해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지만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다음의 대출거래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신 후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거래 시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미국 주식은 가격제한폭이 없으며, 대출비율 65%인 경우 주식평가액 10,000,000 원을 가지고 650 만원 대출 실행 및 주식 매수. 최초담보비율은 253%(=16,500,000 원÷6,500,000 원×100)임. (원달러 환율 1,000 원 가정) → 대출 당일 전일종가 대비 -70% 하락한 가격에 마친다면 주식평가금액은 4,950,000원으로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10,000,000원)을 상회하게 됨 ◎ 담보증권의 가격의 변동으로 담보유지비율(140%) 미만인 경우 추가 담보의 납입을 이행하여야 하나 미이행 시 반대매매(강제판매)로 인한 손실을 부담합니다. ◎ 대출거래계좌의 담보비율이 일정비율(170%) 이하인 경우 고객 계좌내의 현금 및 증권의 출금 및 출고가 제한됩니다. ◎ 회사는 대출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대출거래가 있는 고객은 대출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 추가대출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합니다. ※ 주식담보대출 거래 고객께서는 위에서 예시된 사항이 주식담보대출 거래의 위험과 특성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주식담보대출 거래의 구조 및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신 후 거래해주시기 바랍니다.
---------------------------	--

■ 권리 유의사항

권리 발생 시 대출관련 유의사항	■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그리고 합병, 분할 등 주식수 변화가 발생하는 권리의 경우에만 해당 권리에 대한 담보평가가 인정됩니다. 그 외 권리의 경우 담보평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외주식 관련 권리평가금은 권리처리가 완료된 시점 또는 효력발생일로부터 7 일 후 제거되어 담보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병합 등 권리처리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증권업무안내 > 권리 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

■ 유의사항

주식담보대출 거래 시 유의사항	◎ 회사가 고객에 대한 채권으로 예탁금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담보물을 임의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주식담보대출 신청 시 담보로 제공할 증권과 대출금 등이 맞는지 반드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 약관·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 ◎ 회사는 필요한 경우 주식담보대출 이자율, 연체이자율, 대출비용, 담보유지비용, 추가담보 납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주식담보대출 이자율 등을 포함하여 증권담보용자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 약관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관계법규 제·개정 등으로 약관변경에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으며, 고객통지의 경우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수령 거부의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약정한 날에 주식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하며, 각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담보대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협회 > 금융상품비교공시(dis.kofia.or.kr) > 금융투자회사공시 > 특정공시 > 예탁증권담보용자 이자율) ■ 상속명의변경 시 대출약정 통제 ◎ 상속명의변경 시 미상환 대출금이 있다면 먼저 미상환 대출금을 전액상환 완료 후 상속명의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 ◎ 상속명의변경 시 기존 유지되었던 주식담보대출 약정은 자동으로 해지되기 때문에 상속명의변경 완료 후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상속인 명의로 대출약정 체결이 필요합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 신청고객 통제 ◎ 기준일자를 당일로 하여 잔고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당일에 한하여 대출실행, 대출상환, 출금, 출고가 불가합니다.

■ 금융소비자의 권리

■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개요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토스증권에게 당사가 기록·유지·관리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절차	금융소비자가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의 목적(민원/소송과 해당 자료 간의 연관성 등 기재), 범위(열람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자료 기재), 방법을 기재한 자료열람 요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을 요구한 날로부터 6 영업일 이내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자료가 당사의 영업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경우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안내

개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하면서 판매한 금융상품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금융상품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됩니다. 다만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상 금융상품이 계속적 형태의 금융상품이어야 하며, 계약기간 종료 전에 해당 계약을 해지했을 때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절차	금융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금융상품의 명칭과 법위반사실, 법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한 계약해지요구서를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는 금융소비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후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계약해지요구를 거절할 경우 거절 사유도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해지요구를 당사가 수용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장래에 대해 그 효력을 상실하며, 당사에게 해당 금융상품의 원상회복의무는 없습니다.

■ 청약철회권 안내

개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이며 주로 투자성 상품이나 대출성 상품 가입 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상 금융상품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대출, 보장,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해 적용됩니다.
절차	금융소비자는 ①계약체결일, ②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회사와 고객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 금전 등을 지급받은 날(D)의 익일(D+1)부터 14일이며, 14일째 되는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행사 가능

	- 매도상환 이력이 있거나 반대매매(강제판매) 등의 발생으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청약철회권 적용에서 제외됨.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서면 등(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회사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 토스증권 고객센터(02-1599-7987)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정하는 연체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청약철회권 행사 시 대출 계약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청약철회권과 중도상환과의 차이	※ 대출 중도상환이란? ● 정의 : 대출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 ● 행사기간 : 대출 만기 전으로, 행사기간에 제한이 없음 ● 효과 : 대출이 상환되며, 대출 이력은 삭제되지 않음 ●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별, 상품별 차등 운영(당사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청약철회권 행사와 중도상환과의 차이는 "<참고 1> 청약철회권 행사와 중도상환 비교안내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참고 1> 청약철회권 행사와 중도상환 비교 안내서

■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6 조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권리로, 해당 안내서는 중도상환이 청약철회보다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두 경우를 비교하여 선택하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1.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14 일 이내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비교		
구분	대출 청약철회	대출 중도상환
유리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 기록 삭제	• 부대반환 비용 없음
불리	• 인지세, 근저당설정비 등 대출 관련 금융회사가 제 3 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반환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납부 • 대출 기록 미삭제
2. 14 일 이내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비교		
구분	대출 청약철회	대출 중도상환

비용 1)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 잔존기간에 대해 발생
	반환 부대비용	인지세, 근저당설정비 등 금융회사가 제 3자에게 지급한 비용	-
신용평가 2)	대출기록	삭제	미삭제

1) 통상 “반환 부대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청약철회가 유리

- ◎ 인지세를 부담한 예금담보대출, 한시적 영업전략 등 중도상환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시에만 반환 비용이 발생하므로 중도상환이 유리

2) 중도상환 시 대출(및 상환)이력 유지되나, 청약철회 시에는 이력삭제 ⇒ 청약철회가 유리

- ◎ 차주의 상황에 따라 상환이력, 신용거래기간 항목의 경우 상황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

3.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시 금융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

(예시 1) 대출종류 및 금액 : 예탁담보대출 7 천만원, 부대비용 : 인지세 35,000 원

구분		청약철회	중도상환	비교
비용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반환 부대비용	35,000 원	-	인지세 당사 부담분 반환
	총비용	35,000 원	없음	중도상환이 유리
신용평가	대출기록	삭제	미삭제	

⇒ 비용측면에서 대출 중도상환이 유리(단,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대출이력이 삭제되는 청약철회권 행사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나, 차주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대략적인 금액이므로 실제 청약 철회 또는 상환 시 변동될 수 있음

※ 당사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나, 대출이용기간의 이자는 정상적으로 징구함.

※ 매도상환 또는 반대매매(강제판매) 이력이 있는 경우 청약철회권 적용에서 제외됨.

■ <참고 2> CD 수익률 설명서

■ CD 수익률 설명서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CD 수익률 사용기관이 작성하여 일반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말합니다)와 CD 수익률과 관련된 금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일반투자자에게 CD 수익률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중요내용을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참고자료입니다.

I. CD 수익률의 내용 및 용도

1. CD 수익률의 정의

- ◎ CD 수익률이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 일(만 기가 80 일 이상 100 일 이내면 만기 91 일로 본다)인 CD 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제출기관이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을 말합니다.
- ◎ CD 수익률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거래지표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요지표로 지정('21.3 월)되었으며, 중요지표 지정의 효력 발생은 2023 년 10 월 2 일부터입니다.

2. CD 수익률의 용도

- ◎ CD 수익률은 금융회사 등이 금융계약·거래에서 해당 계약·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교환하고자 하는 금액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 CD 수익률 적용 계약의 범위
대출, 금융투자상품 거래, 보험상품, 신용카드 발급, 시설대여, 할부금융, 어음 할인·인수, 상호부금, 팩토링, 자금예탁, 종합금융회사·단기금융회사 발행 어음 등 (근거: 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 §12① 및 감독규정 §13)

II. CD 기초수익률의 내용 및 산출기준

1. 기초수익률 및 제출기관의 정의

- ◎ 기초수익률이란 금융거래지표법 제 2 조제 2 호가목에 따른 기초자료로서 CD 수익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CD 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 8 조제 2 항에 따라 선정된 제출기관이 「CD 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 10 조제 1 항에 따라 산출하여 협회에 제출하는 수익률을 말합니다.
- ◎ 제출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 조제 5 항제 7 호에 따라 CD 의 매매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를 겸영하는 금융투자회사 중 CD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협회가 선정한 10 개사를 말합니다.

2. 적격거래 선정기준

- ◎ 기초수익률 산출 등에 활용되는 CD 거래를 적격거래라 하며 적격거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AAA 등급 시중은행이 발행한 잔존만기가 45 일 이상 165 일 이내인 CD 거래일 것
- ◎ 건 별 거래량이 100 억원 이상일 것

III. CD 기초수익률 산정방법·절차 및 잠재적 한계

1. 제출기관의 기초수익률 산출방법

- ◎ 제출기관은 다음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가능한 기초수익률을 제출합니다.
- ◎ Level 1 (표준만기*3 개월 발행물 금리): 제출기관이 거래한 적격거래로서 표준만기 3 개월 발행물 거래의 수익률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

⇩ (Level 1 산출 불가시)

- ◎ Level 2 (발행물·경과물을 이용한 선형보간 및 평행이동): 제출기관이 거래한 적격거래로서 당일 발행물(2·4·5 개월), 경과물(2·3·4·5 개월) 거래의 수익률을 선형보간 및 평행이동을 이용하여 산출

⇩ (Level 2 산출 불가시)

- ◎ Level 3 (전문가적 판단): 당일 CD 발행 및 거래내역, 은행채 등 유사채권의 수익률, 한국은행 기준금리, 단기자금시장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수익률 산출
 - i. 표준만기: 2 개월물(45~79 일), 3 개월물(80~100 일), 4 개월물(101~135 일), 5 개월물(136~165 일)

2. CD 수익률의 산출 절차

- ◎ 협회는 제출기관이 제출한 기초수익률 중 상하 각 1 개의 기초수익률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CD 수익률을 산출·공시하며 산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담당기관	내용
기초수익률 제출	제출기관	16 시를 기준으로 기초수익률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기초수익률을 협회에 16 시 15 분까지 제출
기초수익률 검증	협회, 제출기관	미제출기관과 제출한 기초수익률에 왜곡·조작 또는 오류 등(이하 '오류등')이 의심되는 제출기관에 확인 및 시정 요구

CD 수익률 산출·공시	협회	제출된 기초수익률의 상·하 1 개씩을 제외한 평균값으로 CD 수익률 산출 및 16 시 30 분까지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3. CD 수익률의 산출의 잠재적 한계 ◎ CD 수익률 산출은 거래내역과 전문가적 판단기준에 따라 수행되나, 잠재적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CD 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한 CD 실거래 부족 등으로 이 규정에 따라 산출된 CD 수익률이 시장의 금리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점 ◎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 등으로 이 규정에 따라 산출된 CD 수익률이 시장의 금리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점 IV. CD 수익률 산출과정 오류 등의 처리 ◎ 협회는 산출업무의 수행 중 오류 등을 발견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합니다. ◎ 오류 등이 협회 직원의 산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 (왜곡·조작의 경우) 해당 직원의 산출업무 수행 중지 ◎ 오류 등의 정정 및 해당 정정을 반영한 CD 수익률 산출 ◎ ②에 따라 산출된 CD 수익률의 「CD 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 16 조제 2 항에 따른 수정 공시 ◎ (①과 ③에 따른 조치사항) 관리위원회 보고 ◎ (중요사항의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 오류 등이 제출기관의 제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 해당 제출기관에 대한 신속한 정정 및 이에 따른 기초수익률 재제출 요구 ◎ 정정 및 해당 정정을 반영한 CD 수익률 산출 ◎ ②에 따라 산출된 CD 수익률의 「CD 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 16 조제 2 항에 따른 수정 공시 ◎ (③에 따른 조치사항) 관리위원회 보고 ◎ (중요사항의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 협회는 산출과정 뿐 아니라 공시 후에도 오류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며, 공시된 CD 수익률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공시한 CD 수익률에 오류등이 확인된 경우로 다음의 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CD 수익률을 수정 공시하여야 합니다. ◎ 이미 공시한 CD 수익률 수치와 수정 공시하려는 경우의 CD 수익률 수치 간 차이가 백분의 3 퍼센트 포인트. (0.03% point)를 초과하는 경우 ◎ 공시한 당일의 17 시 30 분까지 수정 공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V. CD 수익률 산출 방법·절차상의 중요 사항 변경 및 관련 금융계약에 미치는 영향 1. 중요 사항 변경의 범위 ◎ CD 수익률 산출 방법·절차 관련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의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거래 ◎ 기초수익률 산출 및 제출 ◎ CD 수익률 산출 방법 및 절차 ◎ 기초수익률의 수집·검증 방법 및 절차 ◎ 예외상황에서의 산출업무 수행절차 ◎ CD 수익률 공시 주기 및 방법 및 CD 수익률의 수정 공시정책에 관한 사항 등 2.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금융계약에 미치는 영향 ◎ CD 수익률 산출 방법·절차상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금융계약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CD 수익률에도 영향을 주어 해당 금융계약에 따른 금액 또는 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		

- ◎ 「CD 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 16 조제 2 항에 따른 수정 공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 이후에 오류 등이 발견되어도 수정 공시가 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금융 계약에 따른 금액 또는 가치 변동이 발생하지 않음

VI. 비상사태 및 관련 금융계약에의 영향

1. 비상사태의 범위

- ◎ 협회가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여 산출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비상사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CD 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 14 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CD 수익률 산출·공시가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 ◎ 금융시장에 급격한 시장교란 또는 CD 거래 빈도의 현격한 감소가 지속되어 CD 수익률의 타당성·신뢰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기초수익률 제출을 중단한 제출기관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여 CD 수익률의 타당성·신뢰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그 밖에 산출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

2.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관련 금융계약에의 영향

- ◎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CD 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해당 중단기간 동안 고객과의 협의된 대체금리로 CD 수익률을 대체하여 해당 금융계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VII. 산출업무 중단 시의 비상계획

- ◎ 비상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CD 수익률의 산출업무를 중단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산출업무 중단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1 차 심의·의결
- ◎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산출업무 중단 사유·시기 등의 공시 및 의견 수렴
- ◎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및 반영 여부 결정
- ◎ 산출업무 중단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2 차 심의·의결
- ◎ (산출업무 중단이 결정된 경우)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 신고
- ◎ 산출업무의 他기관 이관 또는 산출업무의 잠정 수행 등 금융위원회의 조치 명령 이행
- ◎ CD 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사용가능한 대체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CD 수익률 대체금리	선정 근거
3 개월 CD 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 등급)의 채권평가 5 사 평균금리	현재 협회가 고시하는 CD 수익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공시

- ◎ CD 수익률이 산출되지 않아 대체금리로 전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홈페이지에 산출업무 중단사유 및 내용, 기간 등을 공시하며, CD 수익률을 대체할 수 있는 수익률 및 선정근거 등을 고객에게 안내
- ◎ CD 수익률이 산출되지 않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CD 수익률 산출중단 사실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메일, 홈페이지 공시 등)
- ◎ CD 수익률 설명서의 세부 안내는 토스증권 고객센터(02-1599-798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록] 대출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	----

담보유지비용	■ 대출거래시 담보증권의 시세변동으로 인한 담보가액의 하락을 막기 위하여 당해 대출거래액 이상으로 담보를 유지하도록 정해진 비용										
반대매매(강제판매)	■ 대출거래에 있어서 상환기한 이전에 담보증권을 매도하여 차금을 수수함으로써 청산하는 행위										
대용가격	■ 증권이 담보가치를 의미하며 증권을 매매할 때 증거금을 현금 대신 증권으로 사용 시 담보로 인정하는 해당 증권 가격										
체차법	■ 대출거래 이자율 산정방식의 하나로, 대출 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식 <예시> <table><tr><td>이자기산일 (6.2)</td><td>30일 경과 (7.1)</td><td>60일 경과 (7.31)</td><td>90일 경과 (8.30)</td><td></td></tr><tr><td colspan="4"></td><td> 총 이자 = 973,971원</td></tr></table> ※ 체차법에 대한 각각 예시의 총 이자는 대출금액 5 천만원, 대출기간 90 일(6.2~8.30)을 가정하여 산출함.	이자기산일 (6.2)	30일 경과 (7.1)	60일 경과 (7.31)	90일 경과 (8.30)						 총 이자 = 973,971원
이자기산일 (6.2)	30일 경과 (7.1)	60일 경과 (7.31)	90일 경과 (8.30)								
				 총 이자 = 973,971원							